

대한궁도협회 사무처장 및 신입직원 공개채용

1 채용분야

채용직급	채용분야	채용인원	근무부서	주요업무
사무처장	사무처장	1명	사무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무처 업무 총괄
사원	사무행정	1명	사무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협회 행정 업무○ 국내대회 및 각종 행사 관련 업무

2 근무형태 및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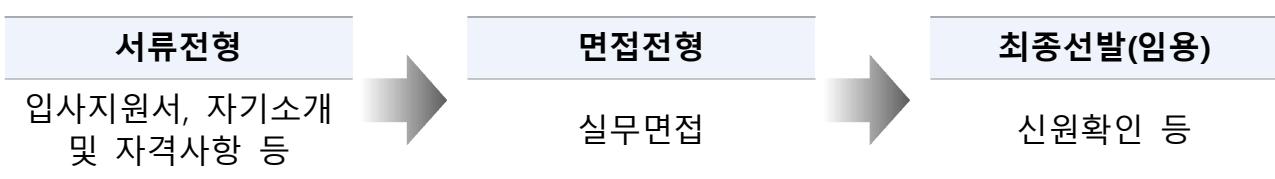
채용직급	근무신분	근무시간	근무지	근로계약기간	월 보수(세전)*
사무처장	계약직* (3개월 수습)	상시근무자,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 (09:00~18:00)	올림픽회관 신관 323호 (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)	채용일~1년간	협의 후 결정
※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평가에 의해 근로계약기간 계속근무 결정					
※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에 따라 매년 1년 단위 계약 연장					
사원	정규직* (6개월 수습)	상시근무자,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 (09:00~18:00)	올림픽회관 신관 323호 (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)	채용일~	2,402,000원
※ 수습기간 6개월 이내 평가에 의해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					

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

구분	주요내용	
사무처장	자격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체육유관단체(종목단체, 시도체육회 등)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우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체육 관련학과 전공자

구분	주요내용
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. * 단,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(만60세) 이상자는 제외 ○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,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* 단,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○ 채용 즉시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(2025년 5월, 서울 송파) ○ 국내·외 주말 출장 가능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(서류마감일(2025.4.27.)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) ○ 체육 관련학과 전공자 ○ 운전면허 소지자(운전 가능자) ○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○ <u>스포츠</u> 관련 자격증 소지자

4 전형절차



가. 채용일정

* 일정은 사무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

나. 전형별 주요내용(채용방법: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경쟁 채용)

구분	주요내용	합격배수						
① 공통(유의사항)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 • 서류전형 지원 시,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 또는 미제출 시 응시 제한될 수 있음. 								
② 전형별 평가방법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선발인원) 채용직급별 5명(채용예정의 5배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• (평가기준) 자격요건, 경력, 자격증, 자기소개, 증빙서류 제출 등 평가 							
서류전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주요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자격요건 확인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필수 자격 충족여부 확인 ○ 제출서류 확인 </td></tr> <tr> <td>가점요소 평가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○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주요내용	자격요건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필수 자격 충족여부 확인 ○ 제출서류 확인 	가점요소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○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	5배수
구 분	주요내용							
자격요건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필수 자격 충족여부 확인 ○ 제출서류 확인 							
가점요소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○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							
면접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일시/장소) 2025. 5. 7.(수) /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• (평가기준) 직업윤리관, 체육상식, 적극성, 성실성, 경력 및 경험 • (평가방법) 면접위원별 5개 항목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항목당 20점 만점, 총점 100점 만점) 	1배수						
최종합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선발기준) 합격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점자 발생 시, 취업지원대상자 → 장애인 → 다음 각 평가항목 고득점자순(성실성 → 적극성 → 직업윤리관 → 체육상식 → 경력 및 경험)으로 결정함. • (최종확정) 지원 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확정 	-						
예비합격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차순위 1~2위를 예비 합격자로 하고, 최종합격자 중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순위대로 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	2배수						

다. 전형단계별 가점대상(최대 10점 반영)

유형	가점대상	전형단계		우대사항	적용기준	관련근거
		서류	면접			
법정	취업지원대상자 (보훈대상자)	✓	✓	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보훈처 발급점수에 따라 전형별 5점 또는 10점 부여¹⁾ 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해당하는 자
정부 권장 정책	청년 (만15~34세)	✓		3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해당하는 청년(서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) 	청년고용촉진특별법
전공	체육 관련학과 전공자	✓		2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체육 관련학과 졸업 	
자격	운전면허 소지자	✓		2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전 가능자 	
	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	✓		2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	
	스포츠 관련 자격증 소지자	✓		2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포츠 관련 자격증 소지자 	

※ 사무처장 직급은 가점유형 중 전공(체육 관련학과 전공자) 이외 해당사항 없음

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 관련,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 (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 적용). 다만, 동법 제31조 제3항 단서 관련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

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제출시기	제출서류	제출방법	용도
① 공통(유의사항)			

- 원서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
- 수신시간 이후 추가 접수 절대불가(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, 제출에 문제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 요망)
-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증빙서류 모두 제출
-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
② 제출서류 및 방법			
원서접수 [4. 15.(화) ~ 4. 27.(일)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사지원서(대한궁도협회 양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메일 및 입사지원서 제목 - 채용분야(성명)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○ 각종 자격증 사본 ○ (해당자)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경력(재직)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함 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○ 병역필 혹은 병역면제 확인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남성지원자에 한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회 이메일로 4. 27.(일)까지 제출 - karchery@sports.or.kr 	입사지원
면접당일 [5. 7.(수)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분증 지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만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본제시 	입사지원 확인용
합격자 발표 후	<p>해당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징계사실유무확인서(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 발급) ○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○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○ 사진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) ○ 채용신체검사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본제출 	

- * 최종합격자(채용예정자) 대상 스포츠윤리센터 발급 “징계사실유무확인서”를 통해 징계이력 확인 예정(관련 근거: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(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제4항)
- *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
< 경력 관련 유의사항 >

- 경력(재직)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,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, 회사 직인(또는 인감)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(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)
- 수기로 기재된 ‘경력(재직)증명서’는 불인정
- ‘경력(재직)증명서’외 서류(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)는 불인정
- 지원서에는 경력(재직)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.
- 재직 중인 경우, 근무기간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재

6 유의사항
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,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궁도협회 직원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.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기 바라며,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경력의 계산, 자격증,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.
-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궁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.



8 임용 결격사유

국가공무원법 제33조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<개정 2010.3.22, 2013.8.6, 2015.12.24, 2018.10.16, 2021.1.12, 2022.12.27>

1. 파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 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 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